

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·과태료 납부고지서 (2026년 8월 수시분) 공시송달 공고

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7조에 따라 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징금·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 및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0일



1. 공고기간 : 2026. 8. 20. ~ 2026. 9. 3.
2. 공고대상 : 붙임 내역 참조
3. 공고방법 : 노원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4.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노원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(한국은행 제외), 농협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거나, 서울시 세금 납부 서비스 시스템<<http://etax.seoul.go.kr>>을 이용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3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, 그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.2%의 증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%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. 붙임내역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노원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(☎02-2116-404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